

# 한림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

‘한림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’은 본 대학원생이 대한민국헌법,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, 자유와 권리 중 대학원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,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, 학생연구자 및 조교로 갖는 대학원생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대학원생의 의무가 준수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.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 (정의)

- ① 대학원이라 함은 한림대학교 대학원(특수대학원 포함)의 모든 전공, 학제전공,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② 대학원생이라 함은 한림대학교 대학원(특수대학원 포함)에서 학위 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을 말한다.
- ③ 학업 및 연구라 함은 학위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 수강 및 연구활동을 말한다.
- ④ 연구출판물이라 함은 논문이나 간행물을 포함하여 대학원 과정 내에 발간한 모든 출판물을 말한다.
- ⑤ 구성원이라 함은 대학원생 및 재직중인 교수, 직원, 연구원 등 한림대학교에 직·간접적으로 고용된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.
- ⑥ 이하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 통념에 따르는 정의와 동일시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- ① 본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의 입학 이후 졸업, 자퇴 등에 의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적용된다.
- ② 교수 및 직원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한림대학교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본 권리장전에서 확인된 대학원생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

### 제3조 (인격권 및 인간 존엄과 가치)

건강과 혼인 및 모성보호, 가족생활 등을 비롯한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관계된 사항은 연구와 학업보다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, 어느 누구도 연구와 학업을 이유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# 제4조 (평등권 보장)

대학원생은 성별, 국적, 인종, 연령, 장애, 종교, 임신과 출산, 정치적 또는 개인적 성향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사유를 근거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.

### 제5조 (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)

- ① 대학원생에게 정당하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는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아니되며, 모든 대학원생은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 대학원생은 전공과 연구주제 분야에 대하여 대학원 및 지도교수와 기타 학내 인적자원으로부터 필요한 시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학문적 지도 및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내 연구 공간 및 지원시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다.

### 제6조 (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)

-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평가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
### 제7조 (지식재산권)

-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공,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적극적으로 기여한 연구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.
- ② 대학원생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,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

결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주저자로서의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.

#### 제8조 (사생활의 자유와 거부권)

- ①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, 학업과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장 받을 수 있다.
- ② 대학원생은 신체적, 언어적,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습하고 연구할 권리가 있으며,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연관성이 없고 사회통념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.

#### 제9조 (건강과 휴식 및 안전에 대한 권리)

- ① 대학원생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, 필요시에는 적시에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.
- ②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.
- ③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권리를 가지며, 대학원은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.

#### 제10조 (구성원으로서의 참여권)

- ① 대학원생은 교수, 교직원과 함께 한림대학교 대학원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.
-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참여하거나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,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다.
- ③ 대학원생은 본 권리장전에서 명기된 권리들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#### 제11조 (권리침해 구제 및 해결절차)

- ① 대학원생은 본 권리장전에 명기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, 대학원에 권리의 침해사실을 통지하고 공식적인 구제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.
- ② 대학원생은 침해사실 통지로 인하여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되며, 구제절차 진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.
- ③ 대학원은 공식적인 구제절차를 요구받은 경우 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구제절차는 반드시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한다.

#### 제12조 (그 밖의 권리)

대학원생의 권리는 본 권리장전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.

### 제3장 대학원생의 의무

#### 제13조 (구성원으로서의 의무)

대학원생은 한림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대학원의 명예와 재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제14조 (연구윤리)

- ① 대학원생은 연구의 제안, 수행, 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관해서 위조, 변조,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② 대학원생은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.

(시행일) 이 권리장전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